

『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 사업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 (2차)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제 약정 체결 컨설팅을 지원하는 「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 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
2025년 8월 6일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1. 모집개요

- 공 고 명 :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 사업
- 모집기간 : 2025. 8. 6.(수) ~ 8. 29.(금) 17:00까지
- 지원대상 : ①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
②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는 기업
※ 경기도 소재 여부는 본사 또는 공장 기준으로 판단함
- 지원내용 : 전문기관을 통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제 체결 컨설팅 지원

구분	지원내용	지원대상	기업부담
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	납품대금 내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비중 확인 후 5% 이상인 주요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	수탁기업 (수급사업자)	도 지원 100%
연동제 체결 컨설팅	연동대상 요건 검토, 적합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	위·수탁기업 (원·수급사업자)	

- 지원규모 : 25개사 내외

2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8. 6.(수) ~ 8. 29.(금) 17:00까지
- 신청방법 : 이메일(wwp@gsa.or.kr) 접수
- 신청양식 :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 해당 공고문에서 다운로드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서식 및 발급처
필수	• 제출서류 체크리스트	서식 1
	• 참가신청서	서식 2
	• 사업계획서	서식 3
	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	서식 4
	• 사업자등록증명	국세청 홈택스
	• 중소기업 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	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(2022~2024)	국세청 홈택스
	• 국세 완납증명서	정부24, 홈택스
	• 지방세 완납증명서	정부24
해당시	• 공장등록증명 (공장 요건 해당시 필수)	정부24

○ 유의사항

-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함
-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엄수 필수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 이후 평가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음

3. 추진절차

① 신청·접수	② 심사·선정	③ 결과통보	④ 기업지원
사업공고 및 신청접수	▶ 적격검토 및 심사평가	▶ 개별 메일 안내	▶ 원재료 비중 확인 및 컨설팅 진행
8월	9월	9월	9월 ~ 11월
기업 → GBSA	GBSA, 평가위원회	GBSA → 기업	전문기관* → 기업

※ 진흥원에서 선정·계약한 전문기관(한국물가정보)을 통한 원재료 비중 확인 및 컨설팅 진행

4. 지원내용

○ 원재료 비중 확인 및 확인서 발급 [대상 : 수탁기업(수급사업자)]

- 납품대금 내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금액을 확인하여 5%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

※ 본 사업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, 기업 간 연동 약정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임

○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제공 [대상 : 위·수탁기업(원·수급사업자)]

- 연동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

※ 선정 후 컨설팅 시 제출 서류(예시)

- 기초 검토자료(계약서, 산출내역서)
- 재료비 단가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)
- 규격 및 소요량(제품 규격서, 도면, 소요량 산출표 등)
- 기타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

※ 선정 이후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

○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

※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시 혜택

-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
- 판로지원금 최대 3,000만원 지급(위탁기업 한정)
- 금리혜택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14종 인센티브 부여

구분	인센티브 내용	
금리혜택	●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평가지 가점	
기업지원사업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●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●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지원사업 ●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 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●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사업 ● 수출기업 교류협력사업 ●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(GMS사업) ● FTA활용 지원사업 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(단체관, 개별지원) ●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
세무조사 유예	●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	
유공납세자 우선선발	●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	

5. 선정방법

- 평가방법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 의한 서면평가
- 선정기준 : 정량·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요소 : 정량평가(20점) + 정성평가(80점)

구분	평가항목	내용	배점
계			100
정량평가 (20점)	매출액증가율	재무제표 기준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증가율	10
	부채비율	재무제표 기준 최근 3개년도 부채비율	10
정성평가 (80점)	컨설팅 필요성	컨설팅 필요성의 구체성 및 타당성	25
	연동제 도입의지	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도 및 내부 추진 의지	30
	활용계획 및 기대효과	컨설팅 결과 활용 방안 및 기대 성과의 구체성	25

6. 기타 유의사항

○ 신청 및 평가 제외대상

-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

○ 제재조치

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,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지원사업 신청, 완료보고서,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금품·향응 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7. 문의처

사업문의	GBSA ESG지원팀	031-259-6286/6283	wwp@gbsa.or.kr
전산문의	경기기업비서 전산담당자	031-259-6299	-

* 접수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